

##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 공고

「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다음과 같이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### 1. 목적

-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)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을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

### 2. 모빌리티 지원센터 지정기관

- (기관명) 한국교통안전공단
- (대표자) 권용복(權容複)
- (주 소)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

### 3.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 및 위탁업무 내용

#### ○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

- 가. 법 제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에 관한 지원
- 나. 법 제6조에 따른 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,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자문 및 지원
- 다. 법 제8조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지원
- 라. 법 제10조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·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마. 실증특례에 관한 자문 및 지원
- 바. 모빌리티 혁신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사.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
- 아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·관리의 지원
- 자. 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운영의 지원
- 차.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#### ○ 모빌리티지원센터 위탁업무 내용

- 가.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
- 나.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
- 다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
- 라.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
- 마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

- 바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
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의 발급
- 사.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
- 아.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접수
- 자. 모빌리티 혁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) 제8조  
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자료의 접수
- 차.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 
자료의 접수
- 카.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의  
접수
- 타.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 지정 요청의  
접수

4. 지정기간 : 2023년 10월 19일부터 2028년 10월 18일까지